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09

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 박성민·김기현·최은석

김성원 • 장동혁 • 고동진

강승규 • 구자근 • 박덕흠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「전기사업법」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「전기사업법」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 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 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 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,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

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 제목 "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"를 "(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, 전력이 남는 경우"를 "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3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	제43조(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		
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 ① (생	<u>거래)</u> ① (현행과 같음)		
략)			
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	②		
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			
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			
사유로 전력이 <u>부족한 경우에</u>	<u>부족하거나 남</u>		
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	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		
수 있고, 전력이 남는 경우	남는 전력을		
「전기사업법」 제43조에 따른			
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			
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			
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.	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